

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	2000. 4. 6	조례 제 261호
개정	2000. 12. 29	조례 제 301호
	2005. 3. 15	조례 제 576호
	2005. 10. 5	조례 제 623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	2006. 10. 13	조례 제 839호(제명개정)
	2008. 5. 9	조례 제 943호
일부개정	2011. 11. 3	조례 제1190호(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)
일부개정	2012. 3. 2	조례 제1221호
일부개정	2016. 4. 15	조례 제1569호
일부개정	2017. 9. 29	조례 제1707호
일부개정	2018. 9. 28	조례 제1865호
일부개정	2022. 1. 6	조례 제2268호
일부개정	2022. 8. 16	조례 제2314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3조,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, 2008. 5. 9, 2016. 4. 15, 2022. 1. 6>

제2조(회의일수) 용인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연간 총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>

[전문개정 2006. 10. 13]

제2조의2(회기) ① 의회는 매년 2회의 정례회를 개최하며,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2. 3. 2, 2016. 4. 15, 2022. 1. 6>

② 용인시의회 의장은 용인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. <신설 2022. 1. 6>

③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회기의 최대 회의일수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1. 6>

[전문개정 2008. 5. 9]

제3조 삭제 <2005. 3. 15>

제4조(집회)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11. 3, 2012. 3. 2, 2016. 4. 15, 2017. 9. 29, 2022. 1. 6>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. 다만,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,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.

[전문개정 2008. 5. 9]

제5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2. 8. 16]

제6조(심의안건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50조의 규정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22. 1. 6>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 2022. 1. 6>

[전문개정 2008. 5. 9]

[중전 제5조에서 이동 2022. 8. 16]

제7조(기타사항) 그 밖에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용인시의회 회의 규칙」으로 정한다. <개정 2006. 10. 13, 2018. 9. 28>

[제목개정 2018. 9. 28]

[중전 제6조에서 이동 2022. 8. 16]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0. 12. 29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3. 15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3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부칙 <2006. 10. 13 조례 제83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5. 9 조례 제94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7조”를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2조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중 “법 제104조 내지 107조”를 “법 제113조 내지 116조”로 한다.

제2조제5호중 “법 제108조”를 “법 제117조”로 한다.

② 「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”로 한다.

③ 「용인시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제3항”을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④ 「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⑤ 「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”을 “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33조”를 “지방자치법 제35조”로 한다.

부칙 <2011. 11. 3 조례 제1190호,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호 중 “총선거”를 “지방선거”로 한다.

② 생략

부칙 <2012. 3. 2 조례 제122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4. 15 조례 제156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9. 29 조례 제170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9. 28 조례 제186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1. 6 조례 제2268호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8. 16 조례 제231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